

검토보고서

안건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2016. 12. 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8일(금)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1일(월)

4. 관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동(同) 조례안은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삭제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음식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 설치·이용 조항 신설(제2조, 제10조)
- 나. 다량배출지역에 대한 별도의 시책 추진 조항 신설(제8조)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용기 지원 조항 신설(제12조)
- 라. 각호 서식명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수정(제16조)
- 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한 자에 대한 개선 기한 삭제(제18조)
- 바.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규 변경(제19조)

[검토의견]

○ 동(同) 조례안은 2016. 3. 24.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우리 구 음식폐기물 문전 수거제 등 시행에 따른 사업추진 근거에 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안은

1. 환경부 개정 지침 및 구민편의 위주의 청소행정 실현을 위해 신설한 내용은

- 1) 안 제2조제7호는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정의내용을 신설하였고
- 2) 안 제8조제9항은 구청장은 홍대주변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밀집지역에

대한 별도의 시책 추지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 3) 안 제10조제3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에 배출할 때에는 RFID 카드를 사용도록 하였으며
- 4) 안 제12조제4항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운반용기 등 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2. 동(同) 조례 내용 중 수정 사항으로는

- 1) 안 제16조제1호 중 제16조제1호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하고,
- 2)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하며,
- 3)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음

3. 동(同) 조례 내용 중 삭제 사항으로는

- 1) 안 제18조제2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근거조항으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

4. 동(同) 조례 내용 중 변경 사항으로는

- 1) 안 제19조제2항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등 일부조례를 개정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6. 10. 20. ~ 11. 9.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으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정의내용 및 RFID 카드 사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홍대주변 등 다량배출지역에 대한 특화구역 지

정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 수거제 도입에 따른 물품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각호 서식명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수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자에 대한 개선 기한을 환경부의 개정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과태료 부과 근거법규를 「지방세기본법」에서 「질서행위위반 행위규제법」으로 변경 하였으며 그 밖에 관련 서식의 명칭을 수정하고 붙여쓴 「서울특별시 마포구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 법규명을 띄어쓰기 등 조례내용을 정비하였고, 또한 동(同)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는 홍대주변 특화구역 지정, 음식쓰레기 배출 시 RFID 카드 사용 및 문전수거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개정되었음

- 다만 폐기물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홍대주변 등 다량배출지역에 대한 특화구역 지정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설치에 따른 RFID 카드 사용 의무화하면서 음식물류 배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종전에 과태료 부과 후 이행사항에 대한 개선 기간을 2개월 주었으나, 상위법에 없는 내용으로 환경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 폐지 요청이 있어 이번에 우리 구 조례에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조례 시행 전에 동주민센터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회의자료를 통한 홍보와 "내 고장 마포"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음식물류 배출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규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3411호, 2015. 07. 20., 일부개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혐의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혐의를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일반현황

(2016.11.현재)

합계	집단급식소 (100인이상)	일반음식점 (200㎡이상)	휴게음식점 (300㎡이상)	대규모점포 (마트등)	농수산물시장 (도매시장)	관광숙박업 (호텔등)
541	86	422	19	4	1	9

○ 점검결과(2회/년)

점검기간	점검업소수 (일반음식점)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관리대장 미비치	분리배출 불이행	기 타	현장시정 조치	행정지도
계	90	32	2	5	2	37
상반기 (6.1~6.20 중 6일)	60	19	2	5	2	24
하반기 (11.8~11.11 중 2일)	30	13	-	-	-	13

□ RFID 종량기 및 감량기 개념

○ RFID의 정의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로 극소형 칩에 정보를 저장하고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를 말함

○ 종량기와 감량기의 구분

명칭	종량기	감량기
정의	음식물쓰레기를 단순히 보관하여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	압축, 파쇄, 건조 등의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와 중량을 줄여주는 기계
사진		